「2021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학습동반자 지원사업」 신청 안내

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 및 학습력 향상 등을 위하여 「2021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학습동반자 지원사업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□ 관련 근거

- ◦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(편의제공 등)
- 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□ 지원 목적 : 고등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

□ 지원 기간 : 2021학년도 제1학기(2021. 3.~2021. 6.)

□ 지원 대상 : 재학 중인 중증(1~3급) 장애학생 우선지원

> 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[별표 1] '장애인의 장애등급표'에 의하되,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경증(4~6급) 학생도 지원 가능
>
> ☞ 단, 심의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<우선 대상>

① 중증(1~3급) 및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) 우선지원

② 이동지원 및 수업대필(학습)-생활지원(배식)순으로 지원

<※ 전문 동반자(속기 및 수화) 우선순위>

① 문자통역 동반자의 지원이 어려운 전공과목

② 전문용어와 수식이 많거나 변환되는 자료가 많은 경우

③ 학생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(중증 청각장애 우선 배정)

□ 지원 내용

- ◦ 국가근로, 자원봉사, 사회봉사 학점인정 동반자 : 장애학생 이동지원, 강의·보고서·시험대필 등 학습지원, 문자통역, 배식지원 등

○ 전문 동반자(내·외부 전문가) : 실시간 속기 및 수화통역

※ 동성 동반자 매칭 :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동반자 우선 매칭

2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구분	신청기간	대상
1차	2021. 1. 25.(월)~2021. 1. 28.(목)	재학생,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
2차	2021. 3. 2.(화)~2021. 3. 8.(월)	1차 미신청자

□ 신청방법 : 상담 후 제출

○ 상담방법

① 청각장애인 : 카카오톡(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) 상담

② 청각장애인 외 : 유선 상담

○ **제출 서류**

① (필수) 2021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학습동반자 지원 신청서 1부

※ 시각장애(전맹)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붙임 3의 신청서를 작성

② (필수) 2021학년도 제1학기 수업시간표(충남대학교 포털-인쇄본) 1부

※ 향후 수강신청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, 변경내용 추가 제출

③ (선택) 의사진단서 1부(경증 장애학생의 경우 선택하여 제출 가능)

○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**장애학생 등록 후 인증을 받은 학생**에 한하여 동반자 지원이 가능함

○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

(전화 : 042-821-5058, 메일 : doumi@cnu.ac.kr, 카카오톡(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)

○ 유의사항

① **동반자 지원 관련 이용자 기본 교육 및 간담회 의무 참석(필수)**

★ 이용자 기본 교육 : 불참 시 동반자 지원 불가능

구분	일시	진행 방법	대상
1차	2021. 2. 26.(금) 10:00(예정)	별도 안내	1차 신청자
2차	2021. 3. 9.(화) 18:00(예정)	별도 안내	2차 신청자

※ 2차 신청자는 기본 교육 이수 후 2021. 3. 10.(수)부터 동반자 지원이 가능함

★ 간담회 : (일시, 장소) 별도 공지

② 장애학생이 요청한 시간에 지원한 동반자가 없을 경우, 지원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,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

③ 아래와 같은 동반자 지원 활동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,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동반자 지원 중단 사유

동반자 활동 중단 사항	**횟수**	**센터 조치사항**	**기한**	**비고**
성희롱 · 성추행 · 성폭력 발생	즉시	- 교내 인권센터 신고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 위원회에서 행위가 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을때 동반자 지원 제한	전학기	사안에 따라 서비스 바로 중지
부정근로 적발 (부정근로 조장 포함)	즉시	동반자 즉시 중단 및 동반자 지원 제한	해당학기+정규 1학기	
무단지각 (10분 이상)	1~2회	담당자와 상담 후 사유서 작성	해당학기+정규 1학기	
	3회	동반자 중단		
무단결석 (30분 이상 지각 포함)	1회	담당자와 상담 후 사유서 작성	해당학기+정규 1학기	
	2회	동반자 중단		
기타 민원제기 (태도불량, 인격적무시 등)	1회	해당내용 사실일 경우, 담당자 상담 후 사유서 작성	해당학기	
	2회	해당내용 사실일 경우 동반자 중단-해당학기 동반자 중단		
기타(장애학생 학습권보장 위원회에서 동반자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)			위원회에서 결정	

※ 장애학생, 동반자 모두 포함하여 적용